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52
----------	------

2016년 12월 1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0. 31.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6. 11. 3.
- 다. 상정 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회 내·외부의 언론홍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언론 및 홍보 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의회 내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 공보실을 언론홍보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 언론·홍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담당 부서인 ‘공보실’을 ‘언론홍보실’로 명칭 변경하고, 의회 접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조사를 위해 민원 전담 부서인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하고자 제안됐음.

2 공보실 부서 명칭 변경 및 ‘시민권익담당관’ 신설(안 제4조)

- ‘공보실’은 1992년 3월 신설된 이후¹⁾ 현재까지 언론매체 보도 지원, 의정 활동 영상 기록 및 촬영, 의회홈페이지 운영 등 의회와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표-1).

<표-1> 의회사무처 공보실 주요 업무

▪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 의정홍보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
▪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 및 기자실 운영	▪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
▪ 대변인실 지원	▪ 의정모니터 운영
▪ 신문방송협력 공동사업	▪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
▪ 뉴미디어 홍보 총괄 및 이슈모니터링	▪ 여론조사 운영
▪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확산되고 쌍방향 소통이 중시됨에 따라, 공보실도 단순한 의회 홍보 업무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수행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왔음.
- 그러나 공보실의 이러한 확장된 업무 영역이 부서명에 드러나 있지 않고, ‘관(官) 주도’의 일방향적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공보’의 개념에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온바, ‘공보실’을 ‘언론홍보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해 변화된 언론·홍보 업무 환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 한편,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7월 기준) 의회에 제기된 민원은 연 평균 375건이고, 그 중 상당수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처리돼야 할 사안임.
 - 현재 의회 내 각종 민원 처리는 5명(5급(1), 6급(4))으로 구성된 ‘민원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1992.3.23.)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 및 의안담당관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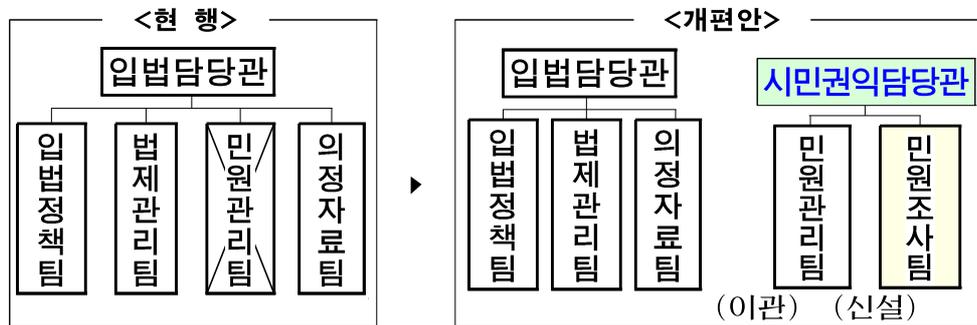
②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4급 상당의 별정직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 밑에 **공보실**을 두며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관리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의회 접수 민원을 집행부에 단순 이첩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의회에는 현안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조정하고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상태임.
- 따라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역 현안 사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시민권익담당관'은 '민원조사팀'과 '민원관리팀'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이 중 '민원관리팀'은 현재 입법담당관 내 소속되어 있는 '민원관리팀'을 이관해 운영할 계획임.

<그림-1> 시민권익담당관 신설·개편 구조(안)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의회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 내 관련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표-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 조직으로 <u>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 담당관·입법담당관</u>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 조직으로 <u>언론홍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u>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

-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의회 접수 민원이 연 평균 375건에 이르고 현안에 따라 분쟁 해결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권익담당관'이 각 팀당 5명씩 총 10명의 정원으로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시의성 및 적시성을 갖춘 높은 수준의 민원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인적·물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모색에 힘써야 할 것임.

3 종합 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의회 내 조직인 ‘공보실’ 명칭 변경(공보실→언론홍보실)과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 관련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민권익담당관’ 신설의 경우, 의회 민원 처리 업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2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시의회 내외부의 언론홍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언론 및 홍보 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의회 내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공보실을 언론홍보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 | |
|-----------------------|-----------------|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 규제심사 대상 해당 안됨 |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 : 해당없음 |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 해당없음 |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 평가제외 |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 제외법령 |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 갈등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붙임
- (2) 입법예고(2016.10.13.~10.18.) 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붙임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운영대 (☎ 2133-663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담당관”을 “언론홍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u>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 담당관·입법담당관</u>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u>언론홍보실·의정담당관·의사 담당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u> 및 예산 정책담당관을 둔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업무 조정 등 사무처 소속기관의 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운영대(☎ 2133-6632)